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추가함(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